



서울교통공사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및 운영방안 알림

1. 관련근거

- 가. 건축처-2855('17.10.12) 『건설사업관리 심의 위원회 운영 검토요청』
- 나. 舊 서울메트로 디자인건축팀-2163('10.3.3) 『책임감리 심의위원회 운영(안)』
- 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2.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 시행·운영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2항(동법 시행령 55조 1항)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고,

3. 건설사업관리의 필요성여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건설공사의 경우(진흥법 제39조 1항 등)에는 공사특성이나 사업여건, 기술인력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사발주부서(해당 처 주관)에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추진 가부를 결정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판단

구 분	변경 전 (구 1-4호선)	변경 후 (서울교통공사)	비 고
건설사업관리	건축처 주관	공사발주부서 (해당 처, 단 주관)	건설사업관리 시행여부 판단

나. 관계법령 주요내용

- 1)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1항)
 - 총 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세부대상 불임참조)
 -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2) **건설사업관리를 할수 있는 경우**(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1항)
 - 설계·시공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호나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 발주청의 기술인력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붙임 1. 관련문서(관련근거 참조) 1부.
 2. 관계법령(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부분발체 1부.
 3. 국토교통부 고시[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부분발체 1부. 끝.

기술본부장

수신자 전기처장, 정보통신처장, 궤도처장, 신호처장, 기계처장, 전자처장, 토목처장, 건축처장, 전기1사업소장, 전기2사업소장, 정보통신1사업소장, 정보통신2사업소장, 궤도1사업소장, 궤도2사업소장, 신호1사업소장, 신호2사업소장, 기계1사업소장, 기계2사업소장, 전자1사업소장, 전자2사업소장, 토목1사업소장, 토목2사업소장, 건축1사업소장, 건축2사업소장, 승강장안전물관리단장, 승강기관리단장

차장 **박성우**

팀장 **이태형**

처장 **기노청**

본부장 10/17
최정균

협조자

시행 기술계획처-3861 (2017. 10. 17.)

접수

우 04806 서울특별시 성동구 천호대로 78길 15-48(용답동)/<http://www.seoulmetro.co.kr>

전화 6311-9715 전송 / psw21c@smrt.co.kr / 대시민공개

부패 '0'의 공기업! 청렴이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인사 이권청탁 배격